



: 2021-05-26

서울중앙지방법원

제 2 - 1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20나69832 위약금 청구
원고, 항소인 주식회사 A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석
피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B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광장
담당변호사 박현수, 한양석
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9. 15. 선고 2019가단5115061 판결
변 론 종 결 2021. 3. 9.
판 결 선 고 2021. 4. 6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

: 2021-05-26

피고는 원고에게 10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%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가운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5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%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,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'2. 추가판단'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<고치는 부분>

○ 4쪽 하1행의 "그 제형과 무관하게"를 "해당 제품이 바이알형 제품인지 백형 제품인지 여부와 무관하게"로 고쳐 쓴다.

2. 추가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바이알형 제품과 백형 제품은 동일한 성분과 용량을 가진 단일한 제형(주사제형)이라고 할 것이고, 그 포장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이를 별개의 제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독점계약의 대상 제품은 백형 제품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.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독점계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실제 원고의 영업에 대한 침해가



이루어졌는지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는데, 피고는 원고가 바이알형 제품을 판매하던 병원에 백형 제품을 납품하여 원고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방해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독점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지급 의무를 진다.

나. 판단

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,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,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).

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,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, 즉 ① 이 사건 독점계약 제3조는 해당 계약의 대상 제품에 대하여 "[별첨1]의 부대합의서에 기재된 품목으로 한다"고 정하고 있는 점, ② 이 사건 부대합의서는 '계약 제품'에 'D', '제품 규격 및 포장형태'에 'Acetaminophen 1g/vial, 100mL/vial'이라고 정하고 있어 제품의 포장형태가 바이알형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, ③ 한편 원고로서는 피고로 하여금 동일 성분, 동일 제형의 제품을 이 사건 독점계약상 지정된 병원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 사건 독점계약에 포함시킴으로서 독점적인 판매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사후에 발생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, 이는 백형 제품이 출시되기 이전이라도 다르게 볼 수 없는 점, ④ 대한민국약전에 따른 "제제"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정하는



"제형"은 인체에 대한 안전성 또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분류 방법에 불과하므로, 이 사건 독점계약과 같은 상업적인 계약대상으로서의 "제품"에 위와 같은 분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독점계약의 대상 제품은 바이알형 제품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계약의 대상 제품에 백형 제품이 포함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, 달리 이 사건 독점계약의 내용을 살펴봐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.

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려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	판사	노태현
	판사	김창현
	판사	김용한